

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32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4.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이유

-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개정령(대통령령 제14,093호 '93.12.31)에 의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중 설계등의 심의대상공사 금액을 적정수준으로 조정코져 하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-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심의 대상금액 10억원이상 200억원미만 공사를 →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 공사로 개정

□ 근거법령

- 대통령령 제14,093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
 - '93. 12. 31 공포
 - '94. 1. 1 시행

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제1호중 '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' 를 '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의' 로 한다.

동조 제2호중 '200억원미만으로서, 당해 건설공사의 허가관서의장이 요청하는 공사' 를 '200억원미만인 건설공사로서 공사발주관서의장, 또는 허가관서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' 로 한다.

동조 제3호중 '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는 그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로서 당해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' 를 '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로서'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